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과 채규남 과장, 박수진 사무관(5863)
덤핑조사과 고재강 과장, 권순심 사무관(5872), 이선덕 주무관(5877)
불공정무역조사과 정병락 과장, 김종윤 사무관(5882)

무역위원회,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

- 유아동용전동차 및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7. 2. 17.(금) 제363차 회의를 개최하고, (사)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.96~38.10%, 중국산 4.57 ~ 27.21%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* 말레이시아산은 '11.2월부터, 중국산은 '13.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

○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,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,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.

* '15년 합판(활엽수) 국내시장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33%, 말련산 13%, 중국산 17%, 인도네시아산 16%, 기타 21%

○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('16. 5. 10.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.

□ 이와 함께, 무역위원회는 ㈜헤네스 및 ㈜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을 판정한 결과,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.

○ ㈜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·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, ㈜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으나,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.

○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,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박수진 사무관(044-203-5863), 덤핑조사과 권순심 사무관(044-203-5872)과, 이선덕 주무관(044-203-5877),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종윤 사무관(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**합판 최종판정 개요**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(요청일)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('16.3.3.)

○ 피요청인 : 말레이시아 신양 등 9개社, 중국 난닝진룬 등 8개사

○ 재심사대상물품

- 품명 : 합판(Plywood)

*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 (침엽수합판 제외)

-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, 포장재 등

□ 국내시장 현황 ('15년 기준)

○ 국내생산자 :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 등 5개사

○ 국내시장규모 : 약 6,800억원 / 약 130만㎥

* 활엽수합판 국내시장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33%, 말련산 13%, 중국산 17%, 인도네시아산 16%, 기타 21%

□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(안)

공급국	공급자	연장조치 건의수준
말레이시아	신양, 포레스컴, 신양빈툴루, 제드티, 메나완	5.50%
	수부르 티아사	5.19%
	자야 티아사	3.96%
	화센	4.45%
	시노라	38.10%
	그 밖의 공급자	8.76%
중국	난닝 진룬	5.19%
	꿰이강 동하이	4.57%
	꿰이강 웨이추앙, 꿰이강 지에셍, 광시 링샨 웨이추앙	5.29%
	지엔타오	5.88%
	뤼천, 산동 신강, 창해, 성저, 리안윤강얀타이	27.21%
	그 밖의 공급자	17.48%

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o 조사개시일 ('16. 5. 10.), 공청회('16. 10. 22.), 최종판정('17. 2. 17.)

붙임2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·판정 개요**

1.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[2개 사건 병합]

□ **(개요)** ㈜헤네스는 국내업체 A社와 B社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 물품을 각각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6.9.)

* 특허 제1116328호(유아동용 전동차의 조향장치 및 그 제어방법)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 결정('16.6.23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7.22 ~ 11.23) → 현지조사('16.9.26, 10.5, 10.14, 11.9) → 기술설명회('16.11.24) → 무역위 의결('17.2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A社와 B社가 각각 수입한 유아동용 전동차는 ㈜헤네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, 이를 수입·판매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조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2. 레이더 디텍터 특허권 침해 조사건

□ **(개요)** ㈜디제이피는 국내업체 C社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 물품을 국내 제조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7.18)

* 특허 제1308083호(광대역 주파수 검출기기)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결정('16.9.7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9.30 ~ '17.1.16) → 현지조사('17.1.4~1.5) → 기술설명회('17.1.20) → 무역위 의결('17.2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C社가 제조·수출한 레이더 디텍터는 ㈜디제이피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, 이를 제조·수출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조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